#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31

발의연월일: 2021. 1. 12.

발 의 자:이용빈・강훈식・고영인

김민철 • 김홍걸 • 문진석

민형배 · 송갑석 · 양향자

윤영덕 • 이규민 • 이병훈

이용호 · 정춘숙 · 한병도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5·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, 자녀, 부모,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, 이들을 5·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5·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,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현재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, 5 • 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 지원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5·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5·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,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·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).
- 나.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5·18민주유공자의 유 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 된 1명을 회원으로 함(안 제57조제2호 단서 신설).
- 다.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9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-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6.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・18민주유공자 중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

법률 제17883호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 조제2호 중 "사람"을 "사람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한다.

법률 제17883호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9조의2(생활조정수당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5 · 18민주유공자
- 2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 순위자 1명

-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상금"은 "생활조정수당"으로 본다.
- ③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·조사·질문 등 수급권 확인·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권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(月額)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	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
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	
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	
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·1
	8민주유공자 중 직계존비속
	(直系尊卑屬)이 없는 경우 형
	제자매 중 추천된 1명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883호	법률 제17883호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	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	법률 일부개정법률
제57조(회원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57조(회원)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	
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.	
	<b>.</b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5 · 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	2
원: 제7조에 따라 5·18민주	
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<u>사</u>	<u>사</u>
람 <단서 신설>	람. 다만, 직계존비속이 없는
	경우에는 형제자매 중 추천된

- 3. (생략) 법률 제17883호 5 ·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5 ·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<신 설>
- 1명을 회원으로 한다.
  - 3.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7883호
  -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89조의2(생활조정수당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5 · 18민주유공자
- 2. 5 · 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
-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 이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 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상 금"은 "생활조정수당"으로 본 다.
- ③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·조사·질문 등 수급권 확인 ·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활 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등에 관

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.

- ④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권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(月額) 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 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